

「구미시 유·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김영태 의원

2. 찬 성 자: 김원섭 의원 외 8인

3. 제안이유

- 구미시에 거주하는 유·청소년의 체육활동 촉진을 위해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, 유·청소년 스포츠 활동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유·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우수선수 및 단체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5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, 제3조
- 「생활체육진흥법」 제5조

6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관내 유·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6세 유년기부터 18세의 청소년까지 학생들의 스포츠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이들의 신체 건강 증진과 지역 내 다양한 스포츠 활동 활성화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또한 구미시는 I-LEAGUE 여름축구축제, 한중일 주니어종합경기대회 등 유·청소년 관련 체육 활성화를 위해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이 관내 스포츠 꿈나무 육성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